보도자료2
(상세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6. 2. 27.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 1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의무이행여부 보고 의무 및 절차 삭제 ····· 2
(2)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의 명확화 ····· 3
(3) 지출증명서류 수취 · 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 ····· 4

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 ····· 5

4.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 6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 7
(2) 지방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 ····· 8
(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 9
(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 ····· 10
(5)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 · 정비 ····· 11
(6)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펀드 범위 규정 ····· 12
(7)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 및 감면 신청 서류 추가 ····· 13
(8)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부규정 마련 ····· 14
(9)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시 농·어민 확인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15
(10)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거래 조성에 따른 법령 정비 등 ····· 16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 ····· 17
(1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18
(13)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19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추가 ····· 20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 21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22
①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당기법인세 배분방법 ····· 22
②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 24
③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방법 보완 ····· 25
④ 외화환산차익 정의 명확화 ····· 26
⑤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구체화 ····· 27
⑥ 전환기 적용면제 간이 실효세율 계산방법 명확화 ····· 30
⑦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보완 ····· 31
⑧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최초적용연도 판단방법 보완 ····· 33
(4)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34
① 내국추가세 계산 시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의 예외 ····· 34
② 내국추가세 신고 관련 서식 ····· 35

7.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1)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반려사유 정비 ····· 36
(2)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규정 ····· 37
(3)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요건 규정 ····· 38
(4)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 ····· 39
(5) 수출용원재료 과다환급금등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조정 ····· 40
(6)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 41
(7)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 ····· 42
(8) FTA 사전심사 수수료 합리화 ····· 43
(9) 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 44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4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26의8⑫) >

□ IMA*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IMA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 수익권 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수익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수익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계산방식 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의무이행여부 보고 의무 및 절차 삭제(법인칙 §19·§19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38·§39) >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의무 삭제

현 행	개 정 안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절차	□ 의무이행여부 보고절차 삭제
○ (보고내용)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 (보고대상) ▪ (한국학교 등*) 주무관청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등 ▪ (공익법인) 국세청 ○ (보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삭 제>
□ 주무관청*·국세청의 의무이행여부 등 점검의무 * (한국학교 등의 주무관청) 보고결과 점검하여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장에 통보	□ (좌 동) ※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점검하여 한국학교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 국세청장에 통보

<개정이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의 명확화(법인칙 §54)

현 행	개 정 안
□ 사업연도중 대표자 변경시 구분계산* 대상 상여처분 *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	□ 적용대상 추가
○ 사외유출금액의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 (좌 동)
<추 가>	○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간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 사업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및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

<개정이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계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출증명서류 수취 · 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법인칙 §79)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 보관 의무 예외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지출증명서류 수취 · 보관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 <u>간이과세자</u>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운수용역, 재활용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 <u>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u>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공받은 재화 · 용역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칙 §15③)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34④) >

□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등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폐기사실 확인서류** 제출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추가
○ (멸실 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 증명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 (환입확인서) 별지 제28호의3 서식	○ (좌 동)
<추 가>	○ (폐기사실 확인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담배 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

<개정이유> 담배의 미반입 폐기사실 확인서류 규정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대상 추가
○ 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	○ (좌 동)
<추 가>	○ 농업용 지게차

<개정이유>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의12)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 등

○ (공제대상 내국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사업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 (공제대상 비용)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등 시행규칙에 위임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콘티·그림·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제작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범위 - (기획) 시나리오, 기획비, 인세 - (제작) 작가비, 제작 프로그램비, 디자인비 - (편집) 편집비, 감수료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동일) □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공제비용 계산방법 ❶ 첫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하여 지출한 모든 제작비용 ❷ 이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비용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24)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60·§60의2) >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 7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본사 이전 **감면요건**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 **본사** 이전 **감면요건·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중인 자산**	○ (좌 동)
<신 설>	□ **공장** 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중인 자산**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 지정기간 만료지역 삭제, 신규지정지역 추가
○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 (좌 동)
○ 주포제2농공단지 * (지정기간) '23.12.30. ~ '25.12.29.	<삭 제>
<추 가>	○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

<개정이유>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신규지정일 이후 최초로 입주한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규칙 시행일 이전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의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82의5·§83의3)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의 **소득요건** 판단 절차

○ ❶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또는 ❷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 가입자의 의견제시

○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 적용 대상 추가
○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청년형소장펀드 등	○ (좌 동)
<추 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內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 (좌 동)

<개정이유> 상호금융 예탁금 가입자 및 출자금 출자자의 권익 보호

(5)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 · 정비 (조특칙 §46의2)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첨부서류 추가 · 정비
○ 거주자군 제출서류	
- 거주자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 및 **작물재배업 소득 계산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구「소득세법 시행규칙」§65②(2)에 따른 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에 따른 서류
- 소득칙상 기부금명세서 등	- (좌 동)
<추 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 내국법인군 제출서류	
- 내국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포함	
- 해외현지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구「법인세법」시행규칙 §82①(60)에 따른 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에 따른 서류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군 제출서류**	
-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 (좌 동)

<개정이유>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시 첨부서류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펀드 범위 규정 (조특칙 §46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16) >

□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 유가증권**을 **국내상장 주식, 국·공채, 펀드** 등으로 **규정**

○ **펀드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 대상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사모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로 발행한 증권

<개정이유> 대학의 안정적 자산운용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 및 감면 신청 서류 추가 (조특칙 §47의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

○ 감면대상 소득 계산식

$$\text{복귀 후 국내 사업장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text{국내 사업장의 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금액 환산방법	□ **복귀 후 축소완료시**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금액 환산방법 추가
○ 축소완료 후 복귀한 경우	○ 축소완료 후 복귀한 경우 및 **복귀 후 축소완료한 경우**
- **축소량**에 해당하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환율** 및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	- (좌 동)
<추 가>	○ **복귀 후 축소진행 중**인 경우 - **축소량**에 해당하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환율** 적용
□ 유턴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확인 시 필요서류** 추가 등
○ 국외 사업장 2년 이상 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서류 등 ○ 산업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좌 동)
<추 가>	○ 산업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8)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부규정 마련(조특칙 §47의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4⑤) >

□ 적자배당의 경우 배당성향을 25%로 간주

○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방식 ○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개정이유> 부채비율 산정방법 명확화

(9)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시 농·어민 확인 서류 제출 부담 완화(조특칙 §48④)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확인 서류 종류 추가
○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 (좌 동)
○ (농·어민 확인 서류) 농·어민확인서* * 지역농협, 지역수협 또는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장이 발급	○ 농·어민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임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발급 (어업)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 ※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거래 조성에 따른 법령 정비 등(조특칙 §50의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5) >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와 **매매거래 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조성자**로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 요건	□ 요건 추가
○ (요건) ❶ 및 ❷	○ (좌 동)
❶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❶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참가자**
❷ 시장조성 업무 담당 임원·직원 지정	❷ (좌 동)
□ 회전율 산식	□ 산식 조정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거래량 ÷ 상장주식수	○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규시장 거래량** ÷ 상장주식수
□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내역 통보	□ 통보 주체 추가
○ (주체) 한국거래소	○ (주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추가**
○ (대상)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 ○ (내역)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 안전시설 범위 확대
○ **산업재해 예방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 포함**
- 가스공급,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제조·저장소, 송유관 등의 안전유지 시설	- (좌 동)
<추 가>	-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 지능형 영상 기록장치·안전 경보장치, 디스플레이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개폐장치** - 자연재해 예방 목적 **방파호안** - 추락방지 목적 **족장 및 트러스 등 구조물**
○ 화재예방·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 (좌 동)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유인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14개 분야* 187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td><td>□ 대상 확대

○ 14개 분야 193개 시설

- 신규 6개
<table>
<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td>바이오·헬스(1)</td><td>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td></tr>
<tr><td>첨단 소부장 (2)</td><td>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td></tr>
<tr><td></td><td>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td></tr>
<tr><td>탄소중립 (3)</td><td>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td></tr>
<tr><td></td><td>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td></tr>
<tr><td></td><td>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8개 분야* 61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추 가></td><td>□ 대상 확대

○ 8개 분야 64개 시설

- (시설) 신규 3개, 확대 2개
▪ (신규) 3개
<table>
<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td>반도체 (1)</td><td>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td></tr>
<tr><td>미래형 운송이동 (2)</td><td>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LNG 화물창 등)</td></tr>
<tr><td></td><td>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td></tr>
</table>
▪ (확대) 2개
<table>
<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td>반도체 (1)</td><td>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
(설계·제조 → 패키징까지 확대)</td></tr>
<tr><td>바이오 (1)</td><td>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td></tr>
</table>
</td></tr>
</table>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추가(국조칙 §2)

< 법 개정내용(국조법 §6) >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추가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추 가>	□ 제출대상 자료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 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국외특수관계인 수정신고서 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국조칙 §3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요건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내국인이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에 소득 유보시 국내배당 간주하여 과세	□ 적용 제외지역 확대
○ 아래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이 해외지주회사 전체 소득의 90% 이상	○ (좌 동)
- 같은 국가	
- 같은 지역	- 같은 지역 범위 확대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과 영국
· 중국과 홍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 (좌 동)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당기법인세 배분방법 (국조칙 §70·별표2)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①·②)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기인하여 **그 소재지국**에 납부한 **대상조세**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기업***으로 **배분**하도록 함

*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포함

○ **세부 배분방법, 배분한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괄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납부한 **대상조세** 배분방법 * 전세계 외납세액 통산 후 단일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국가별 한도 x) ○ **(배분대상)**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 배당지급기업 등 (구성기업 여부 무관) ○ **(배분금액)** 아래 순서에 따라 기업별 배분금액 계산 **❶ 본점·주주구성기업 과세소득 중 국외원천소득 산정** - 본점·주주구성기업이 직접 취득한 국외원천소득*과 해외 소재 배분대상기업이 취득한 소득**을 모두 합산 * 국외원천배당소득도 포함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하나 배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 **❷ 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산정** ※ **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본점·주주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 규칙 기준) -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당기법인세 추정액*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부담세액 * 국내원천소득 관련 당기법인세에 일정 조정사항을 반영한 값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❸ 기업별(본점·주주구성기업 포함) 배분기준액 산정

※ 기업별 배분기준액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기업별 국외원천소득 귀속분* × 적용세율**)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공제가능세액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근거한 기업 유형별 국외원천소득 귀속분 판단 기준

기업 유형	국외원천소득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	본점·주주구성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된 해당 기업의 소득 귀속분
배당지급기업	배당 지급액 (본점·주주구성기업의 국외원천배당소득)
본점·주주구성기업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취득한 소득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

❹ 기업별(본점·주주구성기업 포함) 대상조세 배분

※ 기업별 대상조세 배분금액

$$= \text{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times \frac{\text{해당 기업의 배분기준액}}{\sum (\text{기업별 배분기준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국조칙 §70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③·④) >

□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근거 마련

○ 배분금액·한도,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 배분금액 산출방법 : ❶ ~ ❸ 순서에 따라 계산 ❶ 발생 원천*에 따라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 분류 * ①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②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된 수동소득 外 항목 ③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된 수동소득 항목 ❷ 유형별 배분할 이연법인세 배분금액 계산 ※ 배분금액 = 외납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 추정액* - 공제대상외납세액** * 상기 유형 ②의 경우, 이연법인세비용에 적용되는 세율이 15% 초과 시 15%로 재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소득을 얻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합계액 (상기 유형 ①의 경우, 외납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 추정액 초과 불가)

❸ 발생 원천(상기 ①~③)별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유형	배분 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처리	
	배분구성기업	피배분구성기업
①	차감	미반영
②	차감	가산
③	한도* 이내분 : 차감 한도 초과분 : 잔존	한도 이내분 : 가산 한도 초과분 : 미반영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한도

□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5년선택)

○ 배분하는 구성기업의 관할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법인세에 일괄하여 적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③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방법 보완(국조칙 §70의3)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대상조세 배분대상 구성기업
○ 혼성기업
○ 피지배외국법인

<추 가>

□ 대상조세 배분방법
○ (배분한도) A x B

- A :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한 대상조세 고려 없이 산출한 배분대상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최저한세율(15%) - 국가별 실효세율

- B : 수동소득

<추 가>
※ 국조칙 §70의2 신설에 따른 개정</td><td>□ 범위 확대
○ (좌 동)

○ 역혼성기업

□ 이연법인세 관련 배분방법 추가
○ (배분한도) (좌 동)

- A : 주주구성기업의 대상조세(당기+이연법인세) 고려 없이 산출한 배분대상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좌 동)

- B : (좌 동)

○ (배분순서) 배분누적액과 한도가 동일해지는 수준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우선순위 >
1순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중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환원 관련분
2순위: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
3순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 관련분
* 이연법인세 배분액 : 음수는 0으로 간주

- 한도 초과 시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td></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④ 외화환산차익 정의 명확화(국조칙 §73)

현 행	개 정 안
□ 외화환산차익 정의 ○ 다른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 용어 명확화 ○ 다른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⑤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구체화(국조칙 §89)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9③) >

□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OECD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값

❶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명확화

-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정부조치** 또는 **법인세제 신규 도입**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것

❷ ❶에 따라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까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 가능

*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소멸하는 것

□ **이연법인세자산 제외** 및 **이연법인세자산 환원액의 산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요건 명확화
○ ❶·❷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산입 제외	○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❶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❶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추 가>	- 정부의 세제혜택 제공행위* * 약정·예규·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경우는 제외) - 과세표준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구성기업의 소급적 의사결정

❷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자산	❷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원천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과세소득 간 **영구적 차이**로 인한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도 포함	- (좌 동) * (예시)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
<추 가>	- **향후 지출·활동** 등을 전제로 지급받은 **세제혜택**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될 소득** 관련 **대상조세**의 **사전 납부**는 **제외**
<신 설>	○ **산입 제외의 예외** - **'24.11.18일 이전 발생한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된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 환원액 산입기간 > 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 / 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 — '24~'25년 개시 사업연도 ('27.6월 이전 종료) ③법인세제 신규도입 * 영 §139③(5)다 — '25~'26년 개시 사업연도 ('28.6월 이전 종료)
□ **구성기업 간 자산이전*** 시 **취득기업**의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계산 *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요건 명확화 등**
○ **이전자산**을 **처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 **취득기업**은 **이전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기초로 조정대상조세 계산	○ (좌 동)

<table>
<tr>
<td>

<추 가>

○ 이전자산을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 ❶·❷ 방법 중 택일

❶ 취득기업이 이전자산을 처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❷ 취득기업은 공정가액을 기초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출

</td>
<td>

- 처분기업의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아래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

<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 >

발생기간	이연법인세 발생근거
'21.12.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	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
	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
	③법인세제 신규도입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된 항목

○ (좌 동)

❶ 조정대상조세에도 반영

❷ (좌 동)

- 단, 처분기업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이연법인세자산 계산(방법❶)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 허용

</td>
</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⑥ 전환기 적용면제 간이 실효세율 계산방법 명확화(국조칙 §86)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국가별 간이 대상조세
(간이 실효세율의 분자) 계산방법

○ 적격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
- (❶ + ❷ + ❸)
*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연결조정 전 재무제표 등

❶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❷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법인세비용

❸ 혼성거래약정*에 따라 복수의 구성기업에 중복 산입된 법인세비용
* 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세부담 경감 목적의 거래('22.12.16일 이후 체결분)

<추 가></td><td>□ 간이 대상조세 차감항목 추가

○ 적격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
- (❶ + ❷ + ❸ + ❹)

○ (좌 동)

❹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관련한 법인세비용

<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table><tr><th>발생기간</th><th>이연법인세 발생근거</th></tr><tr><td>'21.12.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td><td>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
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
③법인세제 신규도입</td></tr></table>※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된 항목

- 단, 이연법인세자산 환원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동일 방식으로 산입 가능*
*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액 + 간이 대상조세 산입액)</td></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⑦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보완(국조칙 §88①~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특례 *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❶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세전손익 활용 ※ (원칙) 적격국가별보고서 상 총수익 및 세전손익금액 활용 ❷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자 중 일부라도 정해진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서 전환기 적용면제 미적용 * 예시 : 귀속소득에 대해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 산정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분배된 금액 차감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지급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하는 제도 ❹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투자구성기업은 미고려	□ 특례 대상기업 명확화 ○ ❶의 경우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 ❷ ~ ❻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외의 구성기업에도 적용

❺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세전손익에서 5천만유로 초과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 차감 *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순손실액 ❻ 최초적용연도를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간주 ※ (원칙)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⑧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최초적용연도 판단방법 보완 (국조칙 §88⑦(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최초적용연도 판단 방법	□ 예외 사례 보완
○ (원칙)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사업연도 ○ (예외) 다음 사례에 해당 시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업연도	○ (좌 동)
❶ 구성기업 간 자산 이전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삭 제>
❷ 해외활동 초기기업 대상 소득산입보완규칙 면제 ❸ 신고·납부서류 제출	○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4)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내국추가세 계산 시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의 예외(국조칙 §78의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5의3③) >

□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외에 소재한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해당기업에 배분

○ 배분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 계산 시 **수동소득*** 관련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허용 *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연금소득 등 ○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국내 주주구성기업 등의 선택에 따라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 * 국외의 피지배외국법인과 혼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수동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배분한도 규정(하단 표) ※ **(참고)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한도** $= A \times B$ A: 수동소득에 대해 국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국외구성기업 소재국의 추가세액비율 B: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수동소득 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내국추가세 신고 관련 서식
(국조칙 §91·§92, 별지 제59호·제60호·제61호 서식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2)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구성기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신고 서식 ○ **내국추가세액신고서**(공통제출) : 납세의무자 및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별 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서 ○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법정배분 시) : 법정배분방식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결과 및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지정배분 시) : 지정배분을 적용 시, 각 기업의 합의에 따른 배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1)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반려사유 정비(관세칙 §33의2)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신청하여 사전에 확정받는 제도	□ 반려사유 추가 및 위임규정 신설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 혼합물 ○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물품	○ (좌 동)
<추 가>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분석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반려사유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반려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규정 (관세칙 §39⑤ 신설·§40⑤ 신설·§40⑥)

< 법 개정내용(관세법 §91(4의2)) >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 면제 대상 추가
○ 고쉐병 치료제, 부신백질 디스트로피환자 치료제 등 12종	○ (좌 동)
<추 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다음의 의약품 -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한 의약품 - 식약처장이 질병청장과 협의를 거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긴급도입 의약품

<개정이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요건 규정
(관세칙 §43⑫ 신설·§44⑧ 신설·§58(4) 신설)

< 법 개정내용(관세법 §93(19))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관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면제 대상 물품**	□ **면제 대상 핵심광물 규정**
○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방사선 측정기, 시료채취 및 처리기 등	○ (좌 동)
<추 가>	○ **요건**(❶+❷)을 충족한 **핵심광물** - ❶**조사·개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될 것 - ❷**해외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지분 및 처분권***의 **합계 물량 이내**일 것 * 지분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
□ **사후관리 면제 대상 물품**	□ **대상 물품 추가**
○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등	○ (좌 동)
<추 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개정이유> 핵심광물의 국내반입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 (관세칙 §48①(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관세령 §213③) >

□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면세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물품에 한해 **회수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 미화 800달러 한도	□ **미반출 미회수 면세품 추가**
○ 통상적인 착용·휴대 물품, 직업용구, 재반입물품 등	○ (좌 동)
<추 가>	○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 구매 물품**으로서 **회수하지 않은 물품**

<개정이유>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지 않은 물품부터 적용

(5) 수출용원재료 과다환급금등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조정(환특칙 §16)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금등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연 1.2%	□ 가산금 이율 조정 ○ 연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6)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FTA관세칙 §8⑥)

현 행	개 정 안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호주측 발급기관	□ 호주측 발급기관* 추가 * 한국은 업체 자율발급이므로 발급기관 없음
○ 호주상공회의소 ○ 호주산업협회 ○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 (좌 동)
<추 가>	○ WiseTech Global Pty Ltd

<개정이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동사항 반영

<적용시기> 신규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7)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FTA관세칙 §18⑥)

현 행	개 정 안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인증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 증명 허용 및 간소한 원산지 증명 절차 적용	□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 (좌 동)
<신 설>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

<개정이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8) FTA 사전심사 수수료 합리화(FTA관세칙 §31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 수입신고 전에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등을 관세청에 미리 심사 신청	□ 수수료 부과대상 축소
○ (대상) 모든 신청 물품	○ 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
○ (금액) 신청 물품당 3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사전심사 활성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FTA관세칙 별표4·별표14)

현 행	개 정 안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HS(품목번호) 2017' 기준으로 개별 품목별 규정	□ 협정 개정사항 반영 ○ 'HS 2022' 기준으로 변환* * 품목번호 개정과 함께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예) [한-아세안] 역외산 김으로 생산·수출한 조미김은 한국 원산지로 불인정 [한-베트남] 역외산 식물성 농축액(인삼 제외)으로 생산·수출한 식료품은 한국 원산지로 인정

<개정이유> 국제 품목분류체계 개정 및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협정 개정내용 반영

<적용시기> (한-아세안 FTA) '26.5.1.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베트남 FTA) 협정 개정 발효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환특령	환특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시행규칙